

충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540
----------	------

제출년월일 : 2013. 7. .

제 출 자 : 충 주 시 장

1. 제안이유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여 조례 일부를 정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용법 개정 사항(2008. 5. 26 전부개정) 반영

- 법 제2조제9호 ⇒ 법 제2조제16호(안 제9조)
- 영 제7조의2 및 영 제13조제1항 ⇒ 영 제11조와 영 제18조 제1항(안 제5조)
- 영 제16조제5호 ⇒ 영 제25조제5호(안 제21조)

나. 상위법에 신설된 공설화장시설 사용료 특례 조항 반영(안 별표 3)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전액 면제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전액 면제

다. 상위법에 맞게 공설묘지의 분묘 연장 신청기간 변경(안 제18조)

- 기간만료 30일 전까지 ⇒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

라. 중복 조항 삭제(안 제28조제3항) * 제27조제4항 내용과 중복

마.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2013 . 5 . 24 ~ 6 . 13) 결과 의견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기획감사과-7096(2013.5.6) 해당없음

(3) 부패영향평가 : 기획감사과-7096(2013.5.6) 해당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여성청소년과-13525(2013.5.9) 해당없음

충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7조의2 및 영 제13조제1항”을 “영 제11조와 영 제18조제1항”으로,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장소라 함은”을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조제16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별표 3과 같이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11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중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별표 3에 따라”로, “증빙”을 “증명”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중 “임의”를 “마음대로”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를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한다.

제14조제4호 중 “손괴하거나 오물을 투기하는”을 “파손하거나 쓰레기를 버리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를 “해당할 때에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한다)”를 “한다)를 매장할 때”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발굴되는 유골”을 “발굴된 유골을 매장할 때”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본문 중 “배우자 중 1인”을 “부부 중 1명”으로, “유골”을 “유골을 매장할 때”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만료 30일 전까지”를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최고하여야”를 “독촉하여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평방미터”를 각각 “제공미터”로, “평방미터)”를 “제공미터)”로 한다.

제21조 중 “영 제16조제5호에서 “공설묘지의 수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경우”라 함은”을 “영 제25조제5호에서 “공설묘지의 수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으로 한다.

제22조 중 “비치하여야”를 “갖춰 놓아야”로 한다.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를 “해당할 때에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관내 거주자가 사망하였을 때

제23조제2호 중 “발굴되는 유골”을 “발굴된 유골을 화장할 때”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시에 주소를 둔 외국인이 사망하였을 때

4. 사망 후 관외 장사시설에 안치되었던 관내 거주자를 화장할 때

제23조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를 “해당할 때에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관내 거주자가 사망하였을 때

제25조제2호 중 “발굴되는 유골”을 “발굴된 유골을 안치할 때”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본문 중 “배우자 중 1인”을 “부부 중 1명”으로, “유골”을 “유골을 안치할 때”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시에 주소를 둔 외국인이 사망하였을 때

5. 관외 장사시설에 안치되었던 관내 거주자를 안치할 때

제25조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화장”을 “화장(火葬)”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기타”를 각각 “그 밖의”로 한다.

제28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29조제2항 중 “최고하여야”를 “독촉하여야”로 한다.

제31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별표 2의 제목 “공설장사시설 사용료 및 관리비”를 “공설장사시설 사용료와 관리비”라 하고,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와 관리비 감면(제11조 관련)

구 분	감면 비율	감 면 대 상	비고
공 통	전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가 공익 또는 공공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장 내의 무연분묘에서 발굴되는 유골 - 무연고 행여 사망자 - 그 밖에 시장이 전액 감면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자 또는 의상자 	
공 묘 설 지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공 화 장 장	전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공 봉 안 당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u>정의</u> 는 다음과 같다. 1.·2. (생략)	제2조(정의) ----- ----- 뜻은 -----. 1.·2. (현행과 같음)
제5조(장사시설의 설치 장소) ① 영 제7조의2 및 영 제13조제1항에서 <u>봉안시설(공설봉안당 및 종교단체·재단법인이 설치하는 봉안당은 제외)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 중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장소라 함은</u>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략) ② (생략)	제5조(장사시설의 설치 장소) ① 영 제11조와 영 제18조제1항 ----- -----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란 ----- 1.·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시설의 운영)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탁 운영하는 경우 시장은 예산의 <u>범위 내에서</u>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시설의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 <u>범위</u> ----- -----
제9조(사용권의 승계) ① 공설묘지 및 공설봉안시설의 사용권은 <u>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u> 연고자가 이를 승계한다. ② (생략)	제9조(사용권의 승계) ① ----- ----- <u>법 제2조제16호에 따른</u> ----- -----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시	제11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시

현행	개정안
<p>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가 공익 또는 공공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장 내의 무연분묘에서 발굴되는 유골 2. 무연고 행여 사망자 3. 기타 시장이 전액 감면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p>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3. 「충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의사자 또는 의상자 <p>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등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증빙 서류를 사용 허가 및 신고 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13조(사용 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설장사시설의</p>	<p>장은 별표 3과 같이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p> <p><삭 제></p> <p>② 별표 3에 따라 ----- ----- 증명 ----- -----.</p> <p>제13조(사용 허가의 취소 등) ① - ----- -----</p>

현행	개정안
<p>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개장 또는 원상 복구를 명할 수 있다.</p>	<p>----- -----.</p>
<p>1. (생략)</p>	<p>1. (현행과 같음)</p>
<p>2. 분묘의 형태 및 구조를 임의 변경하거나 묘지에 타 공작물을 설치하였을 때</p>	<p>2. ----- <u>마음대로</u> ----- -----</p>
<p>3.·4. (생략)</p>	<p>3.·4. (현행과 같음)</p>
<p>5.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p>	<p>5. <u>그 밖에</u> ----- -----</p>
<p>②·③ (생략)</p>	<p>②·③ (현행과 같음)</p>
<p>④ <u>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유로 인해 사용 허가가 취소된 경우 이미 납입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u></p>	<p>④ <u>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u> ----- ----- -----.</p>
<p>제14조(금지 행위) 공설장사시설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14조(금지 행위) ----- ----- -----.</p>
<p>1. ~ 3. (생략)</p>	<p>1. ~ 3. (현행과 같음)</p>
<p>4. 시설 및 기물을 <u>손괴하거나</u> <u>오물을 투기하는 행위</u></p>	<p>4. ----- <u>파손하거나</u> <u>쓰레기를 버리는</u> -----</p>
<p>5. 법령 및 조례 또는 기타 사회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위반하는 행위</p>	<p>5. ----- <u>그 밖의</u> ----- -----</p>
<p>제16조(사용 자격) 공설묘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u>해당하는 자에 한하여</u> 사용할 수 있다.</p>	<p>제16조(사용 자격) ----- ----- <u>해당할</u> <u>때에만</u> -----.</p>

현행	개정안
1. 사망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이하 “관내 거주자”라고 한다)	1. ----- ----- ---한다)를 매장할 때
2. 공익 또는 공공의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시 관내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 내의 분묘에서 발굴되는 유골	2. ----- ----- -----발굴된 유골을 매장할 때
3. 배우자 중 1인이 합장용 묘지에 매장되어 있는 경우 그 배우자의 유골. 단, 이 경우 부부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u>부부 중 1명</u> ----- -----유골을 매장할 때. -----.
4. 기타 장사시설의 수급 계획을 분석한 결과 관내 거주자의 이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4. <u>그 밖에</u> ----- ----- -----
제18조(사용기간 등) ① (생략) ② 분묘의 설치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기간 <u>만료 30일 전까지</u> 연장을 신청하여야 하며, 연장 기간에 따른 제10조에 의한 관리비를 납부함으로써 연장이 허가된 것으로 본다.	제18조(사용기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u>만료일부터 3개월</u> <u>이내에</u> ----- -----.
제19조(사용기간이 경과된 분묘의 처리) ① (생략) ② 유연고 분묘의 유골은 연고자로부터 유골의 인도 요구가 없거나 연장 신청을 통한 계속 사용 허가에	제19조(사용기간이 경과된 분묘의 처리) ① (현행과 같음) ② ----- ----- -----

현 행	개 정 안
<p>따른 사용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시장은 30일간의 사용료 납부 기간을 정하여 납부할 것을 <u>최고하여야</u> 한다.</p> <p>③ (생 략)</p> <p>제20조(분묘의 점유면적 및 시설 등) ① 분묘의 점유면적은 분묘 1기 및 비석 등 시설물을 포함하여 10 <u>평방미터</u>(합장의 경우에는 15 <u>평방미터</u>)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② ~ ④ (생 략)</p> <p>제21조(묘지의 사전 매매 등) 열 제16조제5호에서 "<u>공설묘지의 수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경우</u>"라 함은 제9조에 의한 연고자가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에 한한다.</p> <p>제22조(묘적부) 시장은 분묘 사용자와 매장된 사망자와의 관계 등을 기재한 묘적부를 <u>비치하여야</u> 한다.</p> <p>제23조(사용 자격) 공설 화장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u>해당하는 자에 한하여</u> 사용할 수 있다.</p> <p>1. <u>사망일 현재 관내 거주자</u></p> <p>2. <u>공익 또는 공공의 목적으로</u></p>	<p>----- ----- ----- ----- <u>독촉하여야</u> -----.</p> <p>③ (현행과 같음)</p> <p>제20조(분묘의 점유면적 및 시설 등) ① ----- ----- -----<u>제곱미터</u>----- -----<u>제곱미터</u>)----- -----.</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제21조(묘지의 사전 매매 등) 열 제25조제5호에서 "<u>공설묘지의 수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u>"란 ----- ----- -----.</p> <p>제22조(묘적부) ----- ----- ----- <u>갖춰 놓아야</u> -----.</p> <p>제23조(사용 자격) ----- ----- <u>해당할 때에만</u> -----.</p> <p>1. <u>관내 거주자가 사망하였을 때</u></p> <p>2. -----</p>

현행	개정안
<p>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시 관내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 내의 분묘에서 <u>발굴되는 유골</u></p>	<p>----- ----- ----- <u>발굴된 유골을 화장할 때</u></p>
<p>3. <u>시에 주소를 두고 사망한 외국인</u></p>	<p>3. <u>시에 주소를 둔 외국인이 사망하였을 때</u></p>
<p>4. <u>사망 당시 관내 거주자로서 관외 장사시설에 안치되었던 자가 사용하고자 할 경우</u></p>	<p>4. <u>사망 후 관외 장사시설에 안치되었던 관내 거주자를 화장할 때</u></p>
<p>5. <u>기타 장사시설의 수급 계획을 분석한 결과 관내 거주자의 이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u></p>	<p>5. <u>그 밖에</u> ----- ----- ----- -----</p>
<p>제24조(사용 신고 등) ① (생략) ② 시장은 사용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사용자와 사망자와의 관계 및 <u>기타</u> 필요한 사항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p>	<p>제24조(사용 신고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그 밖의</u> ----- -----.</p>
<p>제25조(사용 자격) 공설봉안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u>해당하는 자에 한하여</u> 사용할 수 있다. 1. <u>사망일 현재 관내 거주자</u> 2. 공익 또는 공공의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시 관내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 내의 분묘에서</p>	<p>제25조(사용 자격) ----- ----- <u>해당할 때에만</u> -----. 1. <u>관내 거주자가 사망하였을 때</u> 2. ----- ----- -----</p>

현행	개정안
<p><u>발굴되는 유골</u></p> <p>3. 배우자 중 1인이 부부단에 안치되어 있는 경우 그 배우자의 유골. 단, 이 경우 부부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4. 시에 주소를 두고 사망한 외국인</p> <p>5. 사망 당시 관내 거주자로서 관외 장사시설에 안치되었던 자가 사용하고자 할 경우</p> <p>6. 기타 장사시설의 수급 계획을 분석한 결과 관내 거주자의 이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p> <p>제27조(유골의 안치 등) ① 유골은 반드시 화장한 후 안치하여야 한다.</p> <p>② 유연고 유골을 안치할 때에는 안치 위치, 사용자와 안치자와의 관계,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p> <p>③ 무연고 유골을 안치할 때에는 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장소 등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p> <p>④ (생략)</p>	<p><u>발굴된 유골을 안치할 때</u></p> <p>3. 부부 중 1명----- ----- -----유골을 안치할 때. -- ----- -----.</p> <p>4. 시에 주소를 둔 외국인이 사망하였을 때</p> <p>5. 관외 장사시설에 안치되었던 관내 거주자를 안치할 때</p> <p>6. 그 밖에 ----- ----- ----- -----</p> <p>27조(유골의 안치 등) ① ----- --<u>화장(火葬)</u>-----.</p> <p>② ----- ----- ----- <u>그 밖의</u> ----- -----.</p> <p>③ ----- ----- ----- <u>그 밖의</u> ----- -----.</p> <p>④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제28조(사용기간 등) ①·② (생 략)</p> <p>③ <u>안치자 중 연고자로부터 유골의 인도 요구가 있을 때에는 연고 관계를 확인 후 인도하여야 한다.</u></p>	<p>제28조(사용기간 등) ①·② (현행과 같음)</p> <p><삭 제></p>
<p>제29조(사용기간이 경과된 유골 처리 등) ① (생 략)</p> <p>② 유연고 유골은 연고자로부터 유골의 인도 요구가 없거나 연장 신청을 통한 계속 사용 허가에 따른 사용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시장은 30일간의 사용료 납부 기간을 정하여 납부할 것을 <u>최고하여야 한다.</u></p> <p>③ (생 략)</p>	<p>제29조(사용기간이 경과된 유골 처리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 <u>독촉하여야</u> -----.</p> <p>③ (현행과 같음)</p>
<p>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u>규칙으로</u> 정한다.</p>	<p>제31조(시행규칙) ----- <u>시행에</u> -----.</p>

관계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5. 생략

16. "연고자"란 사망한 자와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던 자를 말하며, 연고자의 권리·의무는 다음 각 목의 순서로 행사한다. 다만, 순위가 같은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명 이상이면 최근친(最近親)의 연고자가 우선 순위를 갖는다.

가. 배우자

나. 자녀

다. 부모

라. 자녀 외의 직계비속

마. 부모 외의 직계존속

바. 형제·자매

사. 사망하기 전에 치료·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시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

제23조의2(공설 화장시설의 사용료에 대한 특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여 공설 화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본조신설 2012.2.1]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공설묘지 등의 설치기준)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공설묘지·공설 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과 수목장립 등 공설자연장지의 설치 및 조성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8조(시설화장시설 등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시설화장시설과 시설봉안시설의 면적, 설치장소 등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설화장시설 및 시설봉안시설의 설치·관리인은 화장 및 봉안에 관한 상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제25조(묘지의 사전 매매 등) 법 제21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4. 생략

5. 공설묘지의 수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분묘 설치기간의 연장신청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연고자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분묘의 설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분묘의 설치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의 연장신청서에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을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법 제13조에 따른 공설묘지에 설치된 분묘 :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2. 법 제14조에 따른 사설묘지(법인묘지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설치된 분묘 : 관할 시장등

3. 법인묘지에 설치된 분묘 : 해당 법인묘지의 설치·관리인

② 제1항에 따라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신청을 받은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분묘 설치기간 연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법인묘지의 설치·관리인은 제2항에 따라 분묘 설치기간 연장증명서를 내어준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시장등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